

제12장

통신

제12.1조

적용범위

1. 이 장은 다음을 포함하여 통신 서비스의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에 적용된다.

가. 공중 통신 서비스에 대한 접근 및 이용에 관한 조치

나. 공중 통신 서비스 공급자의 의무에 관한 조치

다. 공중 통신망 또는 서비스에 관한 그 밖의 조치, 그리고

라. 부가 서비스의 공급에 관한 조치

2. 이 장은 다음을 제외하고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방송하거나 케이블로 배급하는 것에 관한 어떠한 조치에도 적용되지 않는다.

가. 제12.2조는 케이블 또는 방송 서비스 공급자의 공중 통신 서비스에 대한 접근 및 이용에 대하여 적용된다. 그리고

나. 제12.20조는 어떠한 기술적 조치가 공중 통신 서비스에도 영향을 미치는 한도에서 그러한 조치에 적용된다.

3. 이 장의 어떠한 규정도 다음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가. 공중에 일반적으로 제공되지 않는 통신망 또는 서비스를 설치, 구축, 취득,

임대, 운영 또는 공급할 것을 당사국에 요구하거나, 또는 서비스 공급자에게 그렇게 하도록 강제할 것을 당사국에 요구하는 것

나.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의 방송이나 케이블 배급에 전적으로 종사하는 서비스 공급자에게 자신의 방송 또는 케이블 설비를 공중 통신 망으로서 이용 가능하게 하도록 강제할 것을 당사국에 요구하는 것, 또는

다. 사설망을 운영하는인이 제3자에게 공중 통신 망 또는 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하여 자신의 사설망을 이용하는 것을 당사국이 금지하는 것을 차단하는 것

4. 이 장은 부속서 12-가를 조건으로 한다.

제1절

공중 통신 망 및 서비스에 대한 접근과 이용

제12.2조

접근 및 이용

1. 각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서비스 공급자가 전용회선을 포함하여 자국 영역에서 또는 국경을 건너 제공되는 모든 공중 통신 망 또는 서비스를, 제2항부터 제6항까지에 규정된 조건을 포함한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인 조건으로, 접근하고 이용하도록 보장한다.

2. 각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서비스 공급자에게 다음이 허용되도록 보장한다.

가. 공중 통신 망에 상호 연결되는 단말장치 또는 그 밖의 장비를 구입하거나 임대하고 부착하는 것

나. 전용 또는 소유회선을 통하여 개별 또는 복수의 최종이용자에게 서비스를 공급하는 것

다. 소유 또는 전용회선을 공중 통신망 및 서비스나 다른 기업의 소유 또는 전용회선과 접속하는 것

라. 교환, 신호, 처리 및 변환 기능을 수행하는 것, 그리고

마. 다른 쪽 당사국의 서비스 공급자가 선택한 운용규약을 사용하는 것

3. 각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서비스 공급자가 사내통신을 포함하여 자국의 영역에서 또는 국경을 건너 정보를 이동시키기 위하여, 그리고 어느 한쪽 당사국 영역에서 데이터베이스 내에 포함되거나 달리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저장된 정보에 대한 접근을 위하여, 공중 통신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4.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당사국은 메시지의 보안 및 기밀성을 보장하거나 공중 통신 서비스 최종이용자의 개인정보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채택할 수 있다. 다만, 그러한 조치는 자의적이거나 부당한 차별 또는 서비스 무역에 대한 위장된 제한 수단을 구성하는 방식으로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

5. 각 당사국은 다음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외에는 공중 통신망 및 서비스에 대한 접근 및 이용에 대하여 어떠한 조건도 부과되지 않도록 보장한다.

가. 공중 통신망 및 서비스 공급자의 공공 서비스 책임, 특히 그들의 망 또는 서비스를 대중에게 일반적으로 이용 가능하도록 할 수 있는 공급자의 능력을 보호하는 것, 또는

나. 공중 통신망 또는 서비스의 기술적 무결성을 보호하는 것

6. 공중 통신 망 및 서비스에 대한 접근 및 이용을 위한 조건이 제5항에 규정된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그러한 조건은 다음을 포함할 수 있다.

가. 인터페이스규약을 포함하여, 그러한 망 또는 서비스와의 상호접속을 위하여 특정의 기술적 인터페이스를 사용하도록 하는 요건

나. 필요한 경우, 그러한 망 및 서비스의 상호운용성을 위한 요건

다. 망과 상호연결되는 단말장치 또는 그 밖의 장비에 대한 형식승인과 그 장비를 그러한 망에 부착하는 것과 관련된 기술적 요건, 또는

라. 채택되거나 유지되는 경우, 투명하고 당사국의 국내 법 또는 규정에 따라 접수된 신청에 대한 처리를 규정하는 면허, 허가, 등록 또는 신고 절차

제2절

공중 통신 서비스 공급자

제12.3조

공중 통신 서비스 공급자에 관한 의무¹

상호접속

1. 각 당사국은 다음을 보장한다.

가. 자국 영역의 공중 통신 서비스 공급자가 다른 쪽 당사국의 공중 통신 서비스 공급자에게 직접적 또는 동일한 영역 내에서 간접적으로 상호접속을 합

¹ 제 12.3 조제 3 항은 국제 공중 통신 서비스 공급자에 대하여 한국에 적용되지 않는다.

리적인 요율로 제공할 것, 그리고

- 나. 가호를 이행할 때, 자국 영역의 공중 통신 서비스 공급자가 상호접속협정의 결과로 얻은 공중 통신 서비스의 공급자 및 최종이용자의, 또는 이들에 관한, 상업적으로 민감한 정보의 기밀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고 그러한 정보를 공중 통신 서비스를 공급하는 목적으로만 사용할 것

번호이동성

2. 각 당사국은 인터넷전화 서비스 공급자를 제외한 자국 영역의 공중 통신 서비스 공급자가, 기술적으로 가능한 한도에서 그리고 합리적 조건으로, 번호이동성을 제공하도록 보장한다.

전화번호에 대한 접근

3. 각 당사국은, 국제 공중 통신 서비스 공급자를 제외한 그 당사국 영역의 다른 쪽 당사국의 공중 통신 서비스 공급자에게 전화번호에 대한 비차별적인 접근이 부여되도록 보장한다.

제3절

지배적 사업자에 관한 추가 의무

제12.4조

지배적 사업자에 의한 대우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의 지배적 사업자가 다른 쪽 당사국의 공중 통신 서비스 공급자에게 다음에 관하여 그러한 지배적 사업자가 자회사, 계열사 또는 비계열 서비스 공급자에게 부

여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부여하도록 보장한다.

- 가. 동종의 공중 통신 서비스의 이용가능성, 공급, 요율 또는 품질, 그리고
- 나. 상호접속을 위하여 필요한 기술적 인터페이스의 이용가능성

제12.5조 경쟁보장장치

1.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에서 단독 또는 공동으로 지배적 사업자인 공중 통신 서비스 공급자가 반경쟁적 관행에 관여하거나 이를 지속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적절한 조치를 유지한다.
2. 제1항에 언급된 반경쟁적 관행은 특히 다음을 포함한다.

- 가. 반경쟁적 교차보조에 관여하는 것
- 나. 반경쟁적 결과를 수반하며 경쟁자로부터 획득한 정보를 이용하는 것, 그리고
- 다. 공중 통신 서비스 공급자에 대하여 그 공급자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필수 설비에 관한 기술적 정보와 상업적으로 관련된 정보를 시의적절하게 이용 가능하도록 하지 않는 것

제12.6조 재판매

1.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의 지배적 사업자가 공중 통신 서비스의 재판매에 관하여 불

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 또는 제한을 부과하지 않도록 보장한다.

2. 당사국이 자국 영역의 공중 통신 서비스의 지배적 사업자에게 그러한 지배적 사업자가 공중 통신 서비스 공급자가 아닌 최종이용자에게 소매로 제공하는 공중 통신 서비스를 다른 쪽 당사국의 공중 통신 서비스 공급자에 대하여 재판매를 위하여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당사국은 그러한 서비스가 합리적인 요율로 재판매를 위하여 제공되도록 보장한다.

제12.7조

망 요소 세분화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의 지배적 사업자가 공중 통신 서비스의 공급을 위한 망 요소에 대한 접근을 세분화에 기초하여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이며 투명한 조건과 원가지향적인 요율로 제의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자국의 통신규제기관에 부여한다.

제12.8조

상호접속

일반 조건

1.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의 지배적 사업자가

가. 그 지배적 사업자의 망 내의 기술적으로 가능한 모든 지점에서

나. 비차별적인 조건(기술 표준 및 규격을 포함한다) 및 요율에 따라

다. 자신의 동종의 서비스에 대하여, 비계열사 서비스 공급자의 동종의 서비스에

대하여, 또는 자회사나 그 밖의 계열사에 대하여 그 지배적 사업자가 제공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않은 품질로

- 라. 시의 적절하게, 그리고 투명하고 합리적이며 경제적 실현 가능성을 고려한, 그리고 서비스가 제공되기 위하여 요구되지 않는 망 요소 또는 설비에 대하여는 지불할 필요가 없도록 충분하게 세분화되어 있는, 조건(기술 표준 및 규격을 포함한다)과 원가지향적인 요율로, 그리고
- 마. 요청이 있는 경우, 필요한 추가적인 설비의 구축 비용을 반영하는 요금을 조건으로, 대다수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망 종단점에 추가한 지점에서

다른 쪽 당사국의 공중 통신 서비스 공급자의 설비 및 장비를 위한 상호접속을 제공하도록 보장한다.

지배적 사업자와의 상호접속을 위한 선택권

2. 각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공중 통신 망 또는 서비스 공급자가 자신들의 설비와 장비를 다음 중 최소한 하나에 따라 자국 영역의 지배적 사업자의 설비 및 장비와 상호접속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 가. 지배적 사업자가 일반적으로 공중 통신 망 또는 서비스 공급자에게 제의하는 요율 및 조건을 포함하는 표준상호접속제안 또는 다른 표준상호접속제안
- 나. 발효 중인 기존 상호접속협정의 조건, 또는
- 다. 새로운 상호접속협정의 협상을 통하여

상호접속 제안 및 협정의 공개

3.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의 지배적 사업자와의 상호접속 협상을 위한 적용 가능한 절차를 공개한다.

4. 각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공급자에게 지배적 사업자가 제공하는 상호접속에 필요한 요율 및 조건을 획득하기 위한 수단을 제공한다. 그러한 수단은 최소한 다음을 보장하는 것을 포함한다.

가. 자국 영역의 지배적 사업자와 자국 영역의 다른 공중 통신 서비스 공급자 간에 발효 중인 상호접속협정의 공개, 또는

나. 통신규제기관이 정한, 지배적 사업자와의 상호접속을 위한 요율 및 조건의 공개

제12.9조

전용회선 서비스의 공급 및 가격책정²

1.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의 지배적 사업자가 다른 쪽 당사국의 서비스 공급자에게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인 조건과 요율로 공중 통신 서비스인 전용회선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보장한다.

2. 제1항을 이행할 때,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의 지배적 사업자가 다른 쪽 당사국의 서비스 공급자에게 공중 통신 서비스인 전용회선 서비스를 용량 기반의 원가지향적인 가격으로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자국의 통신규제기관에 부여한다.

제12.10조

² 제 12.9 조는 지배적 사업자가 세분화된 망 요소로서 전용회선을 제공함을 보장하도록 당사국에게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설비 병설

1. 제2항 및 제3항을 조건으로,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의 지배적 사업자가 그 당사국의 영역에 있는 다른 쪽 당사국의 공중 통신 서비스 공급자에게 상호접속 또는 세분화된 망 요소에 대한 접근에 필요한 장비의 물리적 설비 병설을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이며 투명한 조건과 원가지향적인 요율로 제공하도록 보장한다.
2. 물리적 설비 병설이 기술적 이유 또는 공간적 제약으로 인하여 요구되지 않거나 실행 가능하지 않은 경우,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의 지배적 사업자가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이며 투명한 조건과 원가지향적 요율로 대안적 해결책을 제공하도록 보장한다.
3. 각 당사국은 자국의 법과 규정에 따라 자국 영역의 어느 구역이 제1항 및 제2항의 적용대상이 되는지 결정할 수 있다.

제12.11조

전주, 관로, 도관 및 선로설치권에 대한 접근

1.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의 지배적 사업자가 그 당사국의 영역 내에 있는 다른 쪽 당사국의 공중 통신 서비스 공급자에게 그 지배적 사업자가 소유하거나 통제하고 있는 전주, 관로, 도관 및 선로설치권에 대한 접근을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이며 투명한 조건 및 요율로 부여하도록 보장한다.
2. 각 당사국은 자국의 법과 규정에 따라 당사국이 자국 영역 내의 지배적 사업자에게 제1항에 따라 접근을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전주, 관로, 도관, 선로설치권, 또는 그 밖의 구조물을 결정할 수 있다.

제4절

그 밖의 조치

제12.12조 해저 케이블 시스템

통신 망 또는 서비스 공급자가 공중 통신 망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해저 케이블 시스템을 운영하는 경우, 자국 영역에 공급자가 소재한 당사국은 그러한 공급자가 다른 쪽 당사국의 공중 통신 망 또는 서비스의 공급자에게, 자국 영역의 해저 케이블 시스템(육양 설비를 포함한다)에 대한 접근³에 관하여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인 대우를 부여하도록 보장 한다.

제12.13조 부가 서비스의 공급조건

1. 어떠한 당사국도 자국이 부가 서비스의 공급자로 분류한 자국 영역의 기업으로서 그 기업이 소유하지 않은 설비를 통하여 그러한 서비스를 공급하는 기업에 다음을 요구할 수 없다.

가. 그러한 서비스를 대중에게 일반적으로 공급할 것

나. 그러한 서비스 요율을 비용상 정당화할 것

³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가. 해저 케이블 육양 설비에 대한 접근은 용량을 조건으로 하고, 그리고

나.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설비를 소유하지 않는 다른 쪽 당사국의 공중 통신 망 또는 서비스 공급자를 위한 접근에 대하여, 한쪽 당사국은 자국 영역에서 허가된 공중 통신 망 또는 서비스 공급자로부터 임차된 설비, 또는 그 공급자로부터 제공되는 공중 통신 서비스를 통한 해저 케이블 시스템에 대한 접근을 보장함으로써 이 규정을 준수할 수 있다.

- 다. 그러한 서비스의 요율표를 제출할 것
- 라. 그러한 서비스의 공급을 위하여 자사 망을 특정 고객과 연결할 것, 또는
- 마. 공중 통신 망 외의 다른 망에 연결하기 위하여 통신규제기관의 특정 표준 또는 기술 규정을 준수할 것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사국은 그 당사국이 자국의 법 또는 규정에 따라 특정 경우에 반경쟁적인 것으로 판단한 부가 서비스 공급자의 관행을 시정하기 위하여, 또는 달리 경쟁을 촉진하거나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1항에서 기술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2.14조 독립적인 규제기관

- 1. 각 당사국은 자국의 통신규제기관이 모든 공중 통신 서비스 공급자로부터 분리되어 있고 이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도록 보장한다. 통신규제기관의 독립성과 공평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각 당사국은 자국의 통신규제기관이 그러한 공급자에 대하여 지분⁴을 소유하거나 운영 또는 경영 역할을 유지하지 않도록 보장한다.
- 2. 각 당사국은 허가, 공중 통신 망 및 서비스와의 상호접속, 요율, 그리고 비정부 공중 통신 서비스를 위한 주파수 할당 또는 배분에 관한 결정 및 절차를 포함한 자국의 규제 결정 및 절차가 모든 시장 참여자에 대하여 공평하도록 보장한다.

제12.15조

⁴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제 12.14 조는 통신규제기관 외의 당사국 정부기관이 공중 통신 서비스 공급자의 지분을 소유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보편적 서비스

각 당사국은 자국이 유지하는 보편적 서비스 의무를 투명하고 비차별적이며 경쟁중립적인 방식으로 운영하고, 자국의 보편적 서비스 의무가 자국이 정의한 종류의 보편적 서비스를 위하여 필요한 정도 이상의 부담을 지우지 않도록 보장한다.

제12.16조 허가 절차

1. 당사국이 공중 통신 서비스 공급자에게 허가를 취득하도록 요구할 때, 그 당사국은 다음을 공개한다.

가. 자국이 적용하는 모든 허가 기준 및 절차

나. 허가 신청에 관한 결정에 이르기 위하여 그 당사국이 통상적으로 요구하는 기간, 그리고

다. 발효 중인 모든 허가의 조건

2. 각 당사국은 요청이 있는 경우 허가 거부, 취소, 갱신 거부 또는 조건 부과 사유를 신청인이 수령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제12.17조 희소자원의 분배 및 이용

1. 각 당사국은 주파수, 번호 및 선로설치권을 포함한 희소 통신 자원의 분배 및 이용에 관한 절차를 객관적이고 시의적절하며 투명하고 비차별적인 방식으로 운영한다.

2. 각 당사국은 분배된 주파수 대역의 현재 상황을 공개한다. 그러나 각 당사국은 특정한 정부 사용을 위하여 분배하거나 할당한 주파수에 대한 세부 내역은 제공하지 않을 권리(?)를 보유한다.

3. 전파를 분배하고 할당하며 주파수를 관리하는 당사국의 조치는, 제10.4조(시장접근)가 국경 간 서비스 무역에 적용되든지 또는 제10.1조(적용범위)제3항의 운영을 통하여 다른 쪽 당사국의 투자자 또는 적용대상투자에 적용되든지 간에 제10.4조에 불합치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각 당사국은 공중 통신 서비스 공급자의 수를 제한하는 효과를 가질 수 있는 전파 및 주파수 관리 조치를 수립하고 적용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한다. 다만, 당사국은 이 협정에 합치되는 방식으로 그렇게 해야 한다. 이는 현재 및 미래의 수요와 전파의 이용가능성을 고려하여 주파수 대역을 분배할 수 있는 능력을 포함한다.

4. 각 당사국은 경제적으로 효율적인 전파의 사용과 통신 서비스 공급자 간 경쟁을 장려하는 방식으로 비정부 통신 서비스용 전파를 분배하고 할당하도록 노력하고, 당사국이 행정적 유인 가격 책정, 경매 또는 비면허 사용에 의한 것을 포함한 다양한 수단에 의하여 이러한 행위를 장려할 수 있음을 인정한다.

제12.18조

집행

각 당사국은 자국의 통신규제기관에 제12.2조부터 제12.12조까지 규정된 의무에 관한 당사국의 조치를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그 권한은 금전적 벌칙, 구제명령(잠정적 또는 최종적), 시정 명령이나 허가의 수정, 정지 또는 취소를 포함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제재를 부과하는 능력을 포함한다.

제12.19조

통신 분쟁의 해결

제16.3조(행정절차) 및 제16.4조(재심사 및 불복청구)에 더하여, 각 당사국은 다음을 보장한다.

이의 신청

- 가. 1) 서비스 공급자는 제12.2조부터 제12.12조까지 규정된 사안에 관한 당사국의 조치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그 당사국의 통신규제기관에 이의 신청할 수 있다. 그리고
- 2) 당사국 영역의 지배적 사업자와의 상호접속을 요청한 다른 쪽 당사국의 공중 통신 서비스 공급자는, 그 공급자가 상호접속을 요청한 후 공개적으로 지정된 합리적 기간 내에, 그 지배적 사업자와의 상호접속을 위한 조건과 요율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통신규제기관에 의한 심사를 구할 수 있다. 그리고

사법적 재심사

- 나. 법적으로 보호되는 자신의 이익이 당사국의 통신규제기관의 판정 또는 결정에 의하여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서비스 공급자는 그 당사국의 공정하고 독립적인 사법당국에 의한 그 판정 또는 결정에 대한 재심사를 받을 수 있다. 어떠한 당사국도, 관련 사법기관이 그 판정 또는 결정을 보류하지 않는 한, 사법적 재심사의 신청이 통신규제기관의 판정 또는 결정을 준수하지 않는 근거를 구성하도록 허용할 수 없다.

제12.20조

투명성

제16.1조(공표)에 더하여, 각 당사국은 다음을 보장한다.

- 가. 그러한 결정의 근거를 포함하여 자국 통신규제기관의 규제 결정이 신속하게 공표되거나 모든 이해관계인에게 달리 공개되도록 할 것
- 나. 적용 가능한 경우, 이해관계인이 자국 통신규제기관이 제안하는 규범제정에 대하여 충분한 사전 공고와 합리적인 의견제출의 기회를 제공받을 것
- 다. 통신규제기관에 제출된 의견에서 제기된 모든 중대하고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자국 통신규제기관이 규범제정 과정에서 응답할 것, 그리고
- 라. 다음을 포함하여 공중 통신 서비스에 관한 자국의 조치가 공개될 것
 - 1) 다음에 관한 조치
 - (가) 서비스의 요율 및 그 밖의 조건
 - (나) 기술적 인터페이스의 규격
 - (다) 단말장치 또는 그 밖의 장비를 공중 통신 망에 부착하기 위한 조건, 그리고
 - (라) 통보, 허가, 등록 또는 면허 요건이 있으면, 그러한 요건, 그리고
 - 2) 사법적 및 그 밖의 심판절차에 관한 절차

제12.21조

기술 및 표준에 관한 조치⁵

1. 어떠한 당사국도 공중 통신 망 또는 서비스 또는 부가 서비스 공급자가 자신의 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기술을 선택할 유연성을 갖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사국은 공중 통신 망 또는 서비스 또는 부가 서비스 공급자가 자신의 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하여 이용할 수 있는 기술 또는 표준을 제한하는 조치를 적용할 수 있다. 다만, 그 조치는 정당한 공공정책 목적을 충족하기 위하여 고안되어야 하며, 무역에 대한 불필요한 장애를 일으키는 방식으로 입안, 채택 또는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⁶

제12.22조

다른 장과의 관계

이 장과 다른 장 간에 불합치가 있는 경우, 그 불합치의 한도에서 이 장이 우선한다.

제12.23조

정의

이 장의 목적상,

상용 이동 서비스란 이동무선수단을 통하여 제공되는 공중 통신 서비스를 말한다.

원가지향이란 원가에 기초함을 말하며, 합리적인 이윤을 포함할 수 있고, 서로 다른 설비

⁵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제 1 항을 제외하고, 이 조는 이 협정의 발효일 전에 채택된 조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⁶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가. 당사국은 자국의 정당한 공공정책 목적을 정의할 권리를 보유하고, 그리고

나. 그러한 조치가 관련 국제 표준에 기초하는 경우에는 언제나, 무역에 대한 불필요한 장애를 초래하지 않는 것으로 추정된다.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서로 다른 비용산출방법을 수반할 수 있다.

최종이용자란 공중 통신 서비스 공급자 외의 서비스 공급자를 포함한 공중 통신 서비스의 최종 소비자 또는 가입자를 말한다.

기업이란 제1.7조(정의)에 정의된 기업을 말하며, 기업의 지점을 포함한다.

필수 설비란 다음의 공중 통신망 또는 서비스의 설비를 말한다.

- 가. 단일의 또는 제한된 수의 공급자에 의하여 배타적 또는 지배적으로 제공되는 것, 그리고
- 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경제적 또는 기술적으로 실현 가능하게 대체할 수 없는 것

상호접속이란 하나의 서비스 공급자의 이용자가 다른 서비스 공급자의 이용자와 통신을 하고 다른 공급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공중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급자와 연결하는 것을 말한다.

전용회선이란 이용자의 전용 사용 또는 이용 가능성을 위하여 따로 둔 둘 이상의 지정된 지점 간의 통신 설비를 말한다.

지배적 사업자란 다음의 결과로 공중 통신 서비스의 관련 시장에서 참가조건(가격 및 공급에 관한 것)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공중 통신 서비스 공급자를 말한다.

- 가. 필수 설비에 대한 지배, 또는

나. 시장에서의 자신의 지위 이용

망 요소란 공중 통신 서비스의 공급에 이용되는 설비 또는 장비를 말하며, 그러한 설비 또는 장비에 의하여 제공되는 특징, 기능 및 성능을 포함한다.

비차별적이란 동종의 상황에서 동종의 공중 통신 망 또는 서비스의 그 밖의 이용자에게 부여된 것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말한다.

번호이동성이란 동일한 범주의 공중 통신 서비스 공급자 간에 전환할 때 품질, 신뢰성 또는 편의성의 손상 없이, 동일한 위치에서 동일한 전화번호를 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공중 통신 서비스의 최종이용자의 능력을 말한다.

물리적 설비 병설이란 공급자가 공중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소유 또는 통제하고 사용하는 구역에서 장비를 설치, 유지 또는 수리하기 위한 공간에 대한 물리적 접근을 말한다.

공중 통신 망이란 공중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사용되는 통신기반을 말한다.

공중 통신 서비스란 당사국이 공중에게 일반적으로 제공되도록 명시적으로 또는 사실상 요구하는 모든 통신 서비스를 말한다. 그러한 서비스는 특히 고객의 정보를 형태나 내용 면에서 종단 간의 변경 없이 둘 이상의 지점 간의 고객이 제공하는 정보를 전형적으로 수반하는 전화 및 데이터 전송을 포함할 수 있고, 부가 서비스는 제외한다.

표준상호접속제안이란 지배적 사업자에 의하여 제시되고 통신규제기관에 제출되거나 통신 규제기관에 의하여 승인된 상호접속제안으로서, 상호접속을 위한 약관, 요율 및 조건이 충분히 상세하게 규정되어 이를 수락하려는 용의가 있는 공중 통신 서비스 공급자는 이에 기초하여 지배적 사업자와의 상호접속을 획득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다른 쪽 당사국의 서비스 공급자란 한쪽 당사국에 대하여 그 당사국 영역의 적용대상투자

이거나 다른 쪽 당사국의 인으로서 그 당사국의 영역에서 또는 그 영역 내로 서비스를 공급하려고 시도하거나 공급하는 인을 말하며, 공중 통신 서비스의 공급자를 포함한다.

통신이란 모든 전자기적 수단에 의한 신호의 전송 및 수신을 말한다.

통신규제기관이란 통신의 규제를 책임지는 중앙정부의 기관을 말한다.

이용자란 서비스 소비자 또는 서비스 공급자를 말한다. 그리고,

부가 서비스란 제고된 기능을 통하여 통신 서비스에 가치를 부가하는 서비스를 말한다.⁷

⁷ 한국의 경우, 이는 구체적으로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2호에 정의된 그러한 서비스를 말한다.

부속서 12-가

한국

1. 제12.7조, 제12.8조제1항가호, 제12.8조제1항마호, 제12.8조제2항다호, 제12.10조 및 제12.11조는 공중 통신 서비스의 별정통신 사업자에 대하여 한국에 적용되지 않는다.
2. 제12.8조제1항나호부터 제12.8조제1항라호까지 그리고 제12.9조에 대하여, 한국은 지배적 사업자가 공중 통신 서비스의 기간통신 사업자에게 제시하는 것보다 불리한 요율 및 조건을 공중 통신 서비스의 별정통신 사업자에 제시하도록 허용할 수 있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한국은 공중 통신 서비스의 별정통신 사업자가 그러한 요율 및 조건에 대한 분쟁에 대하여 제12.19조에 규정된 대로 통신규제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3.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제3항에 합치하게, **별정통신 사업자는** 유선이나 무선 또는 다른 전송 설비를 소유하지 않으나 스위치, 라우터 또는 멀티플렉서를 소유할 수 있으며, 허가된 기간통신 사업자의 전송 설비를 통하여 자신의 공중 통신 서비스를 공급하는 허가된 공중 통신 서비스의 공급자이다.
4. 제12.7조, 그리고 제12.9조부터 제12.11조까지는 상용 이동 서비스 공급자에 대하여 한국에 적용되지 않는다.

이스라엘

1. 이스라엘의 경우 **공중 통신 서비스 공급자는**, 이 장의 목적상, 이스라엘의 허가 제도에 따라 허가된 서비스 공급자를 지칭한다.